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신탁업자: 국민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피델리티 EMEA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나.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.관리기간: 11.11.26~12.11.25

라. 집합투자업자: 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:

HSBC 은행/ ING 생명/ PCA 생명보험/

SC 제일은행/ SK 증권/ 경남은행/

골드브릿지투자증권/ 국민은행/ 대우증권/

동양증권/ 메리츠종합금융증권/

부산은행/ 삼성생명/ 삼성증권/

수협중앙회/ 신영증권/ 신한금융투자/

외환은행/ 우리은행/ 우리투자증권/

유진투자증권/ 제주은행/ 키움닷컴증권/

하나대투증권/ 하나은행/ 하이투자증권/

한국씨티은행/ 한화증권/ 현대증권/

이트레이드증권/ 한국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12.05.02	종류형 추가	-	종류 A-e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| 해당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| 해당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

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| 해당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.교체.해임에 관한 사항

| 해당없음

7.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| 부합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| 적정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
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| 공정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| 적정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| 해당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